## 산학협력단 직원 역량개발 지침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 이라 한다) 직원(이하 "직원" 이라 한다)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교육훈련은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,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기능, 태도를 함양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.
- 제3조(의무) 직원은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.
- 제4조(교육훈련의 주관) 인사관리부서는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및 규정을 수립하고, 직원의 교육을 종합적으로 조정·관리한다.
- 제5조(계획) ① 인사관리부서는 매년 4/4분기 중에 차년도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, 동 계획에 따라 분기별 또는 과정별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세부교육계획의 내용은 교육훈련의 목적, 대상자 범위, 시행절차, 교육과정, 소요예산 및 그 밖에 중요사항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직원은 매년 연초에 인사관리부서에서 제시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참조하여 당해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6조(교육훈련의 구분) 직원의 교육훈련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의무교육"이라 함은 인사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공동체 교육으로서 기본교육, 교양교육, 이러닝 교육 등을 말한다.
  - 2. "역량교육"이라 함은 직급별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직무관 련 교육훈련으로서 직무전문 및 리더십분야 교육 등을 말한다.
  - 3. "법정교육"이라 함은 직장인으로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성희롱예방, 개인정보보호,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말한다.
- 제7조(교육이수시간) ① 직원은 교육이수시간 20시간(의무교육 4시간, 역량교육 10시간, 법정 교육 6시간)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
  - ② 직원이 다음의 사유로 제1항의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속 산학협력단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하다.
    - 1. 장기출장, 파견,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의 경우
    - 2. 질병,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이 60일 이상일 경우
- 제8조(제재사항) 교육대상자는 교육 중 특정한 사유 없이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육비 전액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9조(교육훈련비 지원)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세부교육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훈련에 한 하여 전액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외의 교육인 경우 교육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.
  - 1. 외부기관의 직무관련 교육인 경우 외부교육요청서<별첨1>를 제출받아 개인별 연 최대 3회 지원한다.
  - 2. 어학검정, 자격증 등 외부 교육은 지원요청서<별첨2>를 제출받아 지원한다. 어학교육 수강 시 출석률 80%이상인 경우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.

- 3.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여비 지원) ① 교육대상자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 교육훈련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직원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  - 1. 국내 또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참가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여비규정을 따른다.
    - 2. 교육기관에서 교통편 및 숙식이 제공될 경우 일비만 지급한다.
- 제11조(교육불참) 교육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육 불참 사유서<별첨3>를 교육개시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강사의 운영) ① 교육훈련의 강사는 전문강사, 일반강사로 구분한다.
  - 1. "전문강사"는 과정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,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강사로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.
  - 2. "일반강사"는 해당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, 지식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자를 말한다.
  - ② 전문강사, 일반강사는 모든 내·외부 교육훈련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.
  - ③ 교육훈련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은 산학협력단 내부규정에 따른다.
  - ④ 교육훈련 강사의 교육시수는 강사의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.
- **제13조(평가)** ① 인사관리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모든 교육훈련은 교육과정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교육평가의 종류는 총괄평가, 교육과정평가, 강사평가로 구분되며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.
    - 1. 교육과정평가는 면담, 관찰, 설문지 등의 적절한 평가도구를 선택하여 종합하여 평가한다. 이에 대한 평가양식은 별도로 정한다.
    - 2. 강사평가는 교육과정별 설문을 통하여 평가한다.
- **제15조(평가활용)** 교육주관부서는 교육훈련의 평가결과를 과정별, 기간별로 기록, 유지하여 제반인사관리에 활용하며, 필요시 승진 및 해외연수 자격심사 기준으로 제시한다.
- **제16조(포상)** 산학협력단장은 교육평가에 따라 우수강사 및 교육이수가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(선택).
- 제17조(보칙)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이 지침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 외부교육 요청서

성 명		직 급		
소속				
교 육 명				
교육기관				
교육기간				
교육비				
교육내용				
업무와의 연관성 (교육수강이 필요한 이유)				
위와 같이 외부교육을 요청합니다.				
	년	월 일		
	2	요청자:	(서명)	
	확인자(소속부서장) : (서명)		(서명)	
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				

※ 붙임: 관련 공문 또는 안내문

## 학원수강료/어학검정/자격증 응시료 지원 요청서

성 명		직급				
소 속						
어 학 능 력	□TOEIC, □TEPS, □TOFEL, □JLPT, □HSK, ( )					
	점수/등급	시험일	시행처			
그오기저	교육명	횟수				
교육과정		주 회				
수강기관명	,					
수강기간	20 ~ 20 ( 개월간)					
지원요청금액						
기 지원 횟수						
** 첨부서류  의부학원 수강료 및 자격증응시료 지급을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.  년 월 일  신청자: (서명)  확인자(소속부서장): (서명)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						

## 교육불참 사유서

성 명		직 급		
소 속				
교 육 명				
교육기관				
교육기간				
교육비				
교육내용				
불참사유				
위 사유로 인하여 교육에 불참하게 되었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		작성자 :	(서명)	
확인자(소속부서장) : (서명)				
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				